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필요성 및 기본방향

□ 개정 필요성

- WTO기본통신협상체결에 따른 정보통신시장의 전면개방등 정보통신관련 환경변화를 반영

□ 개정 기본방향

- WTO기본통신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소유 한도 정비
-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사업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 전국전화사업자의 소유·경영간 견제와 균형장치 확립

주요개정 내용

□ 음성재판매등을 별정통신사업으로 허용

< 현 행 >

- 설비 및 역무를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구 분	설비유무	제 공 역 무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보유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사업자	설비임차	기간통신역무이외의 전기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 현행법의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진입금지

-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등
- 설비를 임차하지 않고 기간통신역무 제공 : 국제콜백
- 구내에 전기통신설비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 : 구내통신사업

< 개정내용 >

- 현행법상 진입금지된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 등 통신사업의 진입금지를 철폐하고 일정요건만 갖추어서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분류제도 추가
-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 별정통신사업의 정의 (제4조제3항: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음성재판매(서비스재판매 및 무선재판매 포함), 인터넷폰, 국제콜백, 구내통신사업

○ 진입요건(제19조 : 신설)

- 별정통신사업은 등록으로 하되 초기에 통신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 등 일정등록요건을 부과
- 구내통신사업의 경우 현행과 같이 건물주 또는 소유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규제의 완전철폐)
- ※ 구내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된 건물·시설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구내통신설비의 이용을 제3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제20조 : 신설)

○ 사업시기 : '98. 1. 1부터 허용(부칙 제1조)

○ 지분제한

-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 지분제한은 적용치 않음
- ※ 공중망 접속에 의한 음성재판매는 99년부터 외국인 참여를 허용(49%) 다만, 2000년까지는 국내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

□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 WTO기본통신협상에 따라 '98년부터 외국사업자가 국내통신사업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국경간 공급을 위하여는 국내통신사업자와의 상업적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 외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보호등의 의무를 부과

< 개정조문 >

제59의2(기간통신역무의국경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하 “전기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내지 제31,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7조, 제37조의2, 제53 내지 제55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당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제 7 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 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련조문

- 제29조 : 이용약관 신고
- 제30조 : 이용약관 변경
- 제31조 : 이용약관 공시
- 제33조 : 이용자 보호
- 제33조의2 : 손해배상
- 제36조의3 : 금지행위
- 제37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제53조 : 불온통신단속
- 제54조 : 통신비밀의 보호
- 제55조 : 업무의 제한 정지
- 제62조 : 통계의 보고등
- 제65조 : 시정명령등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정비

〈 현 행(WTO 양허안 포함) 〉

연 도	구 분	유 선	KT	무 선
현 행	동일인	10%	1%	33%
	외국인	0%	0%	33%
98~2000	동일인	10%	3%	33%
	외국인	33%	20%	33%
2001~	동일인	10%	3%	33%
	외국인	49%	33%	49%

※ 99년부터 외국인 대주주 허용(KT는 금지)

〈 개정방향 〉

- WTO기본통신협상 타결내용과 동일하게 개정

〈 개정내용 〉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제6조제3호 : 개정)
 - 2001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1998년에 규정이 달라지는 사항은 부칙에서 특례로 정함
- 한국전기통신공사 지분제한 규정
 -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제한(총발행 주식의 33%, 대주주 금지) 및 국외에서의 주식예탁증서에 의한 주식취득을 사업법에 반영

□ 전국 전화사업자의 소유·경영간 견제와 균형장치 확립

〈 현 행 〉

- 전화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규정
 - 동일인 지분소유 10%초과 및 외국인의 지분소유 금지

- 국가기간통신망을 이루는 전화사업의 소유·경영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방향 〉

- 국가기간통신망의 근간을 이루는 전화망의 안정적 운영과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국전화사업자의 소유와 경영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 ※ 한국통신을 포함하는 주요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도입, 규제완화 및 경제력 집중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기업경영구조 개선및민영화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전국전화사업자의 관련규정에 반영

〈 개정내용 〉

-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제16조제1항 : 강행규정)
 - 전국전화사업자(전국적 규모의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영의 공익성·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
- 주주협회의의 설치(제16조제2항·제3항 : 임의규정)
 - 주주총회의 형식화에 대처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대주주13인이내, 소액주주대표 1인, 우리사주대표 1인으로 구성
 - 주주총회에 사장 또는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권한 부여
-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제16조제4항 : 임의규정)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